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예정)일: 2020. 12. 28

2.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 략) 2.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 8. (생 략) 제7조(결재서비스의 이용) ① (생 략)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보안매체(OTP)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생 략) 제8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① (생 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스마트폰뱅킹 : 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좌 동) 2. "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때, 인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 8. (좌 동) 제7조(결재서비스의 이용) ① (좌 동)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보안매체(OTP)와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좌 동) 제8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① (좌 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스마트폰뱅킹 : 사용자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용어 수정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간편인증번호(6자리 숫자), 패턴인증 * 단, 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인 경우 등록된 스마트폰의 단말 정보와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단말정보가 일치하고, 입력항목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기업인터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제11조(자금이체한도) ① 이용자는 은행이 <표 1-1> 과 <표 1-2> 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백만원) <table><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보안등급별 기본한도</th><th rowspan="2">영업점장 승인</th></tr><tr><th>1 등급</th><th>2 등급</th></tr><tr><td rowspan="2">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td><td rowspan="2">개인</td><td>1 회</td><td>100</td><td>10</td><td>제한없음</td></tr><tr><td>1 일</td><td>500</td><td>10</td><td>제한없음</td></tr></table>	구 분			보안등급별 기본한도		영업점장 승인	1 등급	2 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개인	1 회	100	10	제한없음	1 일	500	10	제한없음	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간편인증번호(6자리 숫자), 패턴인증 * 단, 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인 경우 등록된 스마트폰의 단말 정보와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단말정보가 일치하고, 입력항목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기업인터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제11조(자금이체한도) ① 이용자는 은행이 <표 1-1> 과 <표 1-2> 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백만원) <table><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보안등급별 기본한도</th><th rowspan="2">영업점장 승인</th></tr><tr><th>1 등급</th><th>2 등급</th></tr><tr><td rowspan="2">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td><td rowspan="2">개인</td><td>1 회</td><td>100</td><td>10</td><td>제한없음</td></tr><tr><td>1 일</td><td>500</td><td>10</td><td>제한없음</td></tr></table>	구 분			보안등급별 기본한도		영업점장 승인	1 등급	2 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개인	1 회	100	10	제한없음	1 일	500	10	제한없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용어 수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용어 수정
구 분				보안등급별 기본한도			영업점장 승인																															
			1 등급	2 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개인	1 회	100	10	제한없음																																	
		1 일	500	10	제한없음																																	
구 분			보안등급별 기본한도		영업점장 승인																																	
			1 등급	2 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개인	1 회	100	10	제한없음																																	
		1 일	500	10	제한없음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포함)	법인	1 회	1,000	-	제한없음	포함)	법인	1 회	1,000	-	제한없음	
		1 일	5,000	-	제한없음			1 일	5,000	-	제한없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용어 수정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용어 수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3. (생략)	3. (좌동)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용어 수정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